

『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독거노인, 저소득자, 장애인, 어린이 등의 경우 재난 및
각종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안전에 취약
한 계층이며, 이들에게 재난 및 사고대비를 위해 현 조례
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에 이바

지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해당 조례 정의상의 안전취약계층과 조문 내용상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이 일치되어 있지 않기에,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등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2조제12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규정하고, 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 지원 대상이 되는 “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”을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도시안전건설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